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

# 검토 보고서

2025. 10. 22.(**수**)

검 토 안 건	발	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(서울형 키즈카페)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(안)	구청	형장



## 복지도시위원회 (전문위원 장홍용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(안)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## 1. 제출경위

○ 제출자 : 마포구청장(가족정책과)

○ 제출일 : 2025. 10. 13.

○ 회부일 : 2025. 10. 14.(의안번호 : 25-119)

#### 2. 제출이유

- 아동의 자유로운 '놀 권리'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(민간 키즈카페 2시간 기준 1.8천원 이상)을 경감하고,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 먼지,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용 시설로,
-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,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추진근거
  -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 전용시설의 설치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
  - 추진 필요성
  - 계절·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에 위탁 필요
  -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,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,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·경제성 증대
  - 전문성과 아동 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성 제고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

- 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  -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 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  - 돌봄 및 놀이 복합시설로의 운영 및 관리
  - 조직·인사관리·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
  -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
- 라. 위탁시설 개요
  - 소재지 및 면적

시설명	소재지	면적(㎡)	개관 예정일
염리동2호점	숭문6길 22, 신촌교회 (염리동)	200.85	2026. 4.

#### ○ 위치도 및 현황사진



- 마. 민간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지정위탁(수의계약)
  - \* 수의계약 근거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

## 사. 소요예산(연간)

(단위: 천원)

구분	총계	시비	구비	미고
총계	211,901	135,697	76,204	
<b>인건비</b> (3인기준)	153,001	112,897	40,104	시비: 2명까지 100%, 초과 인원 30% 구비: 1명 초과 인원의 70% *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
운영비	57,000	22,800	34,200	시비40%, 구비60%
복지포인트	1,900	0	1,900	구비100%

## 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-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·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#### 자. 향후일정(안)

- 2025. 10.: 공간 무상사용 협약 체결(신촌교회)
- 2025. 11.~2026. 3.: 리모델링 및 놀이기구 설치
- 2025. 12.: 현장 컨설팅 및 위험가치평가 실시
- 2026. 1.: 위·수탁 협약체결
- 2026. 4.: 준공 및 개소식

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 전용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,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,
- 「아동복지법」제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일관 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,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실내 놀이터는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, 청결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	
가족정책과	<b>송희옥</b> (8910)	<b>연윤희</b> (8961)	

#### 참고자료

#### 1. 관련법규

#### 「아동복지법」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·오락 시설, 교통시설,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 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하는 제34조제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-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  - 1. 수탁자의 명칭.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 - 2. 위탁계약기간
  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 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 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 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 -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제12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-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 2. 운영 인력 및 내용

#### □ 운영인력

○ 운영인력: 3명(시설장 1명, 돌봄요원 1명, 안전관리요원 1명)

- 인력 배치기준: 100m²당 1명

- 필수요원: 돌봄요원, 안전관리요원

#### □ 운영내용

이용대상: 영유아(3세~6세)

- 이용정원: 16명/ 놀이공간(전체면적의 80%) 기준 10m²당 1명

- 이용인원: 22명/ 놀이공간(전체면적의 80%) 기준 7m²당 1명

- 이용요금: 아동 2,000원, 보호자 1,000원

- 이용방법: 우리동네 키움포털 예약

- 운영일 및 이용시간: 월~토, 09:00~18:00

#### (평일) 3회차 운영 / 사전입장 허용

	00:00-	09:20~11:40		11:40 12:00		13:00~15:20		15:20~	15:40~18:00	
시간	09:20     사전	사전 20분	09:40~ 11:40	11:40~ 12:00	12:00~ 13:00	사전 20분	13:20~ 15:20	15:40	사전 20분	16:00~ 18:00
내용	운영 준 비/소독, 청소	예약확인 및 결제, 입장	1회차	소독, 청소	점심	예약확인 및 결제, 입장	2회차	소독, 청소	예약확인 및 결제, 입장	3회차

## (토요일) 4회차 운영/ 회차별 10분 단축 운영, 환기 시간 확보

시간	09:00~	09:10~	11:00~	11:10~	13:00~	14:00~	14:10~	16:00~	16:10~
	09:10	11:00	11:10	13:00	14:00	14:10	16:00	16:10	18:00
내용	운영 준비 /소독, 청소	1회차	소독, 청소	2회차	점심	소독, 청소	3회차	소독, 청소	4회차

## 3. 프로그램 운영계획

특 화프로그램운영계획(놀이기구 포함)



- ㅇ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
  - 지역의 가용 자원 활용: 미술, 원예놀이, 쿠킹클래스, 부모참여프로그램
- ㅇ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
  - 동행일자리, 노인일자리, 뉴딜일자리 등 일자리 연계사업 활용

## 4.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조성현황

## 〈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조성 현황〉

연 번	구분	구분	조성(운영)기간	사업유형	면적(㎡)	비고			
1	운영중	상암점	23.8.31.	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	600				
2	조성중	염리동 쌍룡산근린공원점	23.2.~25.12.	쌍룡산근린공원 건축(신축)	249.91	공원녹지과			
3	조성중	서강동1호점	24.11.~25.11.	서강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	426.82 (420.9)				
4	조성중	서교동1호점	25.2.~25.11.	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	407.1	무상임차 (최소 10년)			
5	조성중	서교동2호점	24.1.~26.4.	SH공사 노후매입 주택 활용 생활SOC 조성사업	274.82	무상임차 (최소 10년)			
6	조성중	서강동2호점	24.1.~27.10.	구립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 대체신축	450				
7	조성중	도화동점	25.10.~26.4.	도화장난감대여점 리모델링	258				
8	조성중	염리동 신촌교회	25.10.~26.4.	신촌교회 리모델링	200.85	무상임차 (최소 10년)			
	서울시 직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현황								
1	조성중 (서울시)	노고산점	24.11.~26.4.	신촌지역 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343	서울시 직영			
2	주말형 (서울시)	난지한강공원	9월~11월 운영		150㎡ 이상	서울시 직영			



## 5. 2025년 운영실적

363회차 운영, 이용인원: 17,090명 이용 (하루평균 63명, 회차당 평균 47명)

※ 2024년 이용료 수입: 25,347천원